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시 인가방식 및 절차

- ▲ 은행법 제8조 은행업인가 규정에 따른 ‘인가내용의 변경’을 통해 전환
- ▲ 신규인가에 준하여 법령상 모든 세부심사요건 심사
- ▲ 예비인가 절차는 생략 가능하되, 신청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진행

정부는 2023년 7월 5일 은행권 경쟁촉진을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

현행 은행업 인가체계상 은행업 영위를 위해서는 시중은행·지방은행·인터넷전문은행 모두 은행법 제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시중은행·지방은행·인터넷전문은행은 인가요건·절차가 대부분 동일하나, 일부 인가요건* 및 영업구역·방식에서 차이가 존재합니다.

* 최소자본금: (시중銀) 1,000억원 (지방銀) 250억원 (인터넷銀) 250억원
비금융주력자 주식보유한도: (시중銀) 4% (지방銀) 15% (인터넷銀) 34%

<표> 영업구역 및 영업방식에 따른 은행의 종류 구분

영업방식 \ 영업구역	전 국	일부 제한
온 + 오프라인	시중은행	지방은행
온라인	인터넷전문은행	-

다만, 현행 은행법령상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며, 종전에도 은행 종류의 전환 사례는 없었습니다. 지방은행의 정관에서 특정지역으로 제한하고 있는 영업구역을 전국으로 변경시 시중은행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일부의견도 있으나, 은행 종류의 전환은 금융감독정책의 중요사항으로 사전 승인절차 없이 정관 변경만으로 허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사무처) 및 금융감독원은 현행 은행법령 체계에서 지방 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방식·절차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 은행 전환시 인가방식 및 절차」를 마련하여 2024년 1월 31일 제2차 금융 위원회 정례회의에 보고하였습니다.

먼저, 인가방식은 은행법 제8조의 은행업인가 규정에 따른 “인가내용의 변경” 방식입니다. 시중은행으로 “신규인가” 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기존 지방은행 인가에 대한 별도의 폐업인가가 필요할 수 있고, 지방은행의 법률관계가 시중은행으로 승계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인가내용의 변경” 방식의 경우 지방은행 인가에 대한 별도의 폐업인가가 불필요하며, 법적 불확실성의 해소가 가능합니다

단, 인가내용의 변경이라 하더라도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의 전환은 중요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 만큼, 신규인가에 준하여 법령상 모든 세부심사 요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 대주주 요건, 사업계획의 타당성 요건, 임원 요건, 인력·영업시설·전산설비 요건 등

특히, 종전 대비 은행의 영업범위가 확대되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계획, 내부통제, 임원의 자격요건 등 경영 관련 세부심사요건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히 심사할 계획입니다. 또한, 세부심사요건의 타당성 점검을 위한 절차인 외부평가위원회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필요한 절차를 생략없이 모두 진행하겠습니다.

예비인가는 신청인의 본인가 가능성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불필요한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와 같은 예비인가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미 인적·물적설비 등을 갖추고 은행업을 영위중인 지방은행이 시중 은행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예비인가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신청인이 바로 본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비인가를 생략하되, 신청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인가 신청 전 예비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한편,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검사·조사가 진행중인 지방은행의 경우 금융사고가 “주주”가 아닌 “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문제라면 제재확정 전이라도 시중은행 전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사고라면 은행법상 인가요건 중 대주주 결격 사유나 은행업감독규정상 인가심사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금융사고와 관련하여 임원의 제재가 예상되는 경우, 인가신청시 관련서류에 향후 제재가 확정될 경우 대상임원에 대한 조치계획 등 신청인의 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외부평가위원회를 통해 그 적정성을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금융사고 발생 은행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세부심사요건 중 “내부통제체계의 적정성” 관련 사항을 보다 엄격하게 심사하겠습니다.

향후 지방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위해 인가내용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인가방식 및 절차에 따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추후 은행법 개정을 통해 전환 방식·절차를 명시적으로 반영하는 것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별첨]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시 인가방식 및 절차

담당 부서	금융산업국 은행과	책임자	과장	강영수 (02-2100-2950)
		담당자	사무관	김경호 (02-2100-2953)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책임자	국장	정우현 (02-3145-8020)
		담당자	팀장	김지웅 (02-3145-8022)



1.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방식 및 절차를 발표한 이유는?

- 정부는 작년 7.5일 은행권 경쟁촉진을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등 은행 신규인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 다만, 현행 은행법령상에는 은행 종류의 전환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과거에도 전환 사례는 없었음
- 이에 은행법령 체계下에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방식·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함

2. 이미 은행업을 영위중인 지방은행에 대해 신규인가에 준해서 심사 절차를 진행하는 이유는?

- 과거 인가를 받아 은행업을 영위중인 지방은행이라 하더라도,
 -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의 전환은 중요사항의 변경인 만큼 법령상 모든 세부심사요건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함
- 참고로 대법원도 처분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음

※ (대법원 2011두21485) 이미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새로운 검정절차를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으므로 검정절차상의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3. 인가심사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심사할 계획인지?

- 시중은행으로서 사업계획, 내부통제, 임원의 자격요건 등 경영 관련 세부심사요건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계획임
 - 이에 대해서는 세부심사요건의 타당성 점검을 위한 절차인 외부 평가위원회를 통해 그 적정성을 심사하고자 함

4. 통상적인 은행업 인가의 경우 본인가 전 예비인가를 거치는데, 생략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 예비인가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본인가 이전 신청인의 본인가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하여 불필요한 투자를 방지하기 위함
 - 이를 고려할 때, 이미 인적·물적설비 등을 갖추고 은행업을 영위중인 지방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예비인가를 거칠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됨
- 다만, 신청인이 예비인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인가 신청 전 예비인가를 신청한다면 생략없이 진행 가능함

5. 지방은행 금융사고에 대한 검사가 종료되지 않았는데, 검사 종료 이전 시중은행 전환 신청 및 심사가 가능한지?

-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은 은행법상 인가규정(제8조)에 따라 심사하게 되는 바,
 - 은행업감독규정(제5조제6항제3호)에서는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주”가 형사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 인가심사가 중단될 수 있다고 규정
- ▶ 따라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과 관련하여 금융사고가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주가 아닌 “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문제라면 제재확정 전이라도 인가심사 진행이 가능
- 하지만, 금융사고 발생 은행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 인가심사 과정에서 “내부통제체계의 적정성”에 대해 보다 엄격히 심사할 것임

6.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시기는 언제로 예상하는지?

- 아직 시중은행 전환을 신청한 지방은행이 없는 상황이므로, 현 시점에 인가시기를 예측하기는 어려움
- 다만, 통상적인 신규인가와 달리 이미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은행업을 영위중인 점 등을 감안하여 심사를 진행할 예정임

7. 지방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시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지?

- (영업 관련) 가장 대표적인 변화는 영업구역이 전국으로 확대되어 새로운 영업구역에서 은행간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며,
 - 지방은행 디스카운트로 인한 시중은행 대비 높은 조달금리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함
- (법령상 규제) 비금융주력자 주식보유한도(15% → 4% 초과보유 금지)와 최소 자본금 요건(250억원 → 1,000억원)이 강화됨